#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25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제출자)	(제출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00223	민병덕의원	2024. 6. 7.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					(2024. 8.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1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2200533	송기헌의원	2024. 6. 17.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					(2024. 8.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3		2200888	오세희의원	2024. 6. 25.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 8.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보고 및 내세도론들 기서 중요벤서기합 소위원회 회부
		2201370	박지혜의원	2024. 7. 4.	「구히번」 제58조제/하에 따라 소의
4					원회 직접 회부(2024. 8. 19.)
		2202644	구자근의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5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2202993	박성민의원	2024. 8. 20.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6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모고 및 내세도돈을 거져 중소멘서기입
					소위원회 회부
		2203618	박성훈의원	2024. 9. 4.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7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8		2204605	이철규의원	2024. 10. 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원회 직접 회부(2024. 11. 20.)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4. 11. 22.)에 서 위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 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 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공공요금의 급격 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하므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소상공인재난 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기본

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 장기화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대출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정부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 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의8 신설).
-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영업자 고 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 다.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과세정보, 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 집합 제한 · 금지 조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 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 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

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고,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 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 법률 제 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7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 · 종료일, 휴업 신고일
  -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 마. 다음에 따라 전송 · 제출받은 정보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 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 2.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 가.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나. 조치의 위반 여부, 내용, 위반 기간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

- 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 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로 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재 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 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 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정보 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유예"를 "유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을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연장 및 상환 유예의"를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 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
	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
	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④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제17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
	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
	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
	<u>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

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 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

     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 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 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 호
    -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 업 신고일

-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 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 을 말한다)의 성명·주민 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 호, 법인등록번호
  - 2) 사업 개시일, 주업종,부업종
  -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 업 신고일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 업자등록번호
-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 「소 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 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신고한 다음의 정보
-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 자
-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

   <u>자</u>
-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 업자
- <u>마. 다음에 따라 전송·제출</u> 받은 정보
  - 1)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
     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
     증 결제금액
  -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3)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후단 및 「법인세 법」 제121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 급액
- 2.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 료(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u>주소로</u> 한정한다): 행정안전 <u>부장관</u>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 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지 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가.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u>나. 조치의 위반 여부, 내용,</u> 위반 기간

이행 기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 이 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개인 장, 개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 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 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 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 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 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 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 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 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

<신 설>

<신 설>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고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환 유예 등) ① -----

-----상환기간의 연 환을 하게 할----.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 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 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 ·기술·재무·회계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u>연</u> <u>장 및 상환 유예의</u> 기준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9조(벌칙) ① <u>제12조의5제4항</u> 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있다.

제29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u>-----

- 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목적으로 사용한 자
-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
   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② (현행과 같음)